

원산지
CASE 2 튜브 조립체

판정번호
N361172

물품 정보

용도

- 차량용 튜브 조립체
- 촉매 변환기에서 정화된 배기가스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 수행

CBP 판단

- 서로 다른 원산지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제조한 경우, 실질적 변형 여부는 각 부품이 원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완성품에 일체적으로 통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
- 각 부품에 대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
 - 직선형 파이프: 한국에서 수행된 확장 및 굽힘 가공을 통해 특정 형상을 갖춘 식별 가능한 차량용 부품으로 전환
 - 플레어 너트·브래킷: 파이프와 결합을 통해 개별 부품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완성된 튜브 조립체의 구성요소로 일체화

직선 형태의 파이프 및 부속 부품에 대한 조립 확장·굽힘 가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구성함

제조 공정



- 외국산 및 국내산 부품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최종 완제품을 제조

① 부품 수입·국내 조달

- 직선형 파이프(베트남산) 및 플레어 너트(중국산) 수입
- 브래킷(한국산) 국내 조달

② 완제품 제조(한국)

- 부품 조립·굽힘 가공·누설 시험
- 건조·포장 및 출하

미국 원산지 결정

최종 공정(조립·확장·굽힘 가공)
수행국(한국)을
비특혜원산지로 판단